

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시행

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500-5367

◇ 주요 내용

- 정부는 금융기관의 단기외채를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기 위하여
 - '97.12 및 '98.1 국회로부터 총 270억불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동의를 받고
 - 연장대상으로 확정된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채무 218.36억불의 만기연장에 대해 4.8부터 정부지급보증을 개시하였음.
- 한편, 정부는 지급보증에 따른 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(1) 지급보증 수수료 징구하고 (2) 채권확보를 위한 감채기금을 적립토록 하였음.
 - 지급보증수수료는 경영이 건전한 금융기관을 우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(BIS 자기자본비율 및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)에 따라 차등징수하고
 - 감채기금은 금융기관이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조로 보증액의 일정비율 금액을 외평기금에 적립하도록 하였음.

1. 지급보증수수료 징구

- 기준 : 신용등급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및 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0.2%-1.5%까지 차등 적용(은행·증권사 공통)

(연율, %)

BIS 자기자본비율(IMF 기준)					
	8% 이상	7%	6%	5%	5% 미만
국가신용등급	0.2	0.4	0.6	0.8	1.0
기타	0.3	0.6	0.9	1.2	1.5

주) 국가신용등급 : Moody's 사 또는 S&P중 하나만 충족되면 인정

- 기준적용 : 매 6개월(반기결산) 단위로 재조정
- 징수방법 : 매 6개월마다 후취

2. 감채기금의 설치

- o 적립처 : 외국환평형기금
- o 적립률 : 지급보증금액의 3%
 - 매월 0.25%씩 1년간 적립
- o 이자율 : 기간별 정기예금 이자율 지급
- o 적립통화 : 외화(US\$원칙)
- o 인출 : 지급보증액 상환시까지 인출 및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고, 채무 상환액 상당비율에 따라 인출